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 연구용역 지원신청서

7 H	접수번호	*	ī	<u></u> 과제번호	*				
구 분	과제구분	자유과제							
	국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驛屯土成冊 심화 해제						
연구과제명	, _	- 중	정도	<u> - 지역을 중</u>	<u>심으로</u>				
	영문	*							
	성명			전공(학위)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이메일			전화					
연구참여자	공동연구	1원(연구책임자 제외)		1명	연구보조원	1명			
총 연구기간		2021년 계약체결일	~	2022년	1월 15일				
연구비신청액		사천삼백사십이만팔천	원(약	일금 ₩43,42	8,000원)				

본인(등)은 귀 연구원의 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에 의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인)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인)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인)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0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귀중

◎ 주의

[※]표시는 기입하지 말 것.

^{*} 연구내용을 별도로 영문으로 발표할 경우만 기재

연구계획서 요약

연구과제명	(국.한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驛屯土成冊 심화 해제					
	- 충청도지역을 중심으로					
	(영문) The deepening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the public					
	lands ledger owned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focused on the Chungcheongdo province					

현황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466종 1,833책의 驛屯土成冊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驛屯 土成冊은 함께 분류되어야 할 동일한 성격의 성책이 파편화되어 서로 다른 성격의 成 冊과 뒤섞여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역둔토성책에 대 해서는 기본적인 해제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자들이 역둔토성책을 활용하는 데 제 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화 해제란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동일한 성격의 역둔토 성책을 지역(각 군)을 단위로 묶고 査檢・定賭・徵收의 관리체계에 조응해서 분류한 역둔토성 책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이 목록에 기초하여 여러 건의 동일한 성격의 역둔토성책을 한 질로 묶고 통합 정리한 1건의 해제를 작성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해당 역둔토성책과 관련된 문서와 양안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사업은 총 1,833책 가운데 1차 연구 작업을 완료한 경기도지역(425책)에 이어서 충청도지역 453책(24.7%)의 역둔토성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역둔토성책 분류 목록작성과 심화해제작성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심화해제의 내용은 가) 자료 현황, 나) 관련 역둔토의 내력, 다) 査辦·査檢成 冊 내용 검토, 라) 賭租記類 내용 검토, 마) 관련 驛屯土量案 정리, 바) 관련 문서류 정리, 사) 기타 사항으로 구성할 것이다.

◆ 예상 연구결과 정보

- 충청도지역 역둔토성책 목록작성.
- 충청도지역 역둔토성책 453책에 대한 심화해제는 각 군을 단위로 동일한 성격의 역둔토성책들을 한 질로 묶어 각 1건씩 작성할 예정임.
- 총 해제 건수는 1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
- 해제는 HWP로 작성하며, 심화해제 1건당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로 전체 2,500 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

연구계획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驛屯土成冊 심화 해제

1. 연구의 필요성

■ 토지제도사 · 국가재정사에서 역둔토의 위치

조선시대 국가기관은 各司自辦의 원칙에 따라 역둔토를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계기로 국가재정기구가 일원화되면서 역둔토는 중앙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갑오개혁 이후 역둔토는 국가 재정의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대한제국기에는 황실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지배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역둔토는 국유지로 정리되었고,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국가재정사 측면에서 역둔토는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가 식민지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주요 재원으로 취급되었다. 토지제도 사 측면에서 역둔토는 중답주가 국가와 길항관계를 형성하며 중층적 토지소유구조를 해체해간 공간이자,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역둔토는 국가재정사와 토지제도사 측면에서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에놓여 있는 대상인 것이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驛屯土成冊의 분류체계와 해제 양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역둔토성책은 거의 대부분 갑오개혁기와 대한제국기에 생산된 것이다. 이 시기 역둔토를 관할했던 기구는 査檢・定賭・徴收라는 역둔토 관리체계에 조응해서 역둔토성책을 생산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역둔토성책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서분류체계의 원질서가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査檢・定賭・徴收 과정에서 생산된 역둔토성책은 고유의 성격을 상실한 채 서로 다른 성격의 成冊과 뒤섞여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역둔토성책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조차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이 역둔토성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역둔토성책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査檢・定賭・徴收 체계에 조응하는 문서분류와 이에 기초한 심화해제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역둔토 관련 자료

갑오개혁기와 대한제국기에 역둔토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크게 문서 류와 대장류로 구분된다. 문서류는 역둔토 관할 기관이 지방기구에 내린 訓令, 지방기구가 중앙에 올린 報告, 민들이 제출한 訴狀이 중심을 이루고, 대장류는 역둔토의 위치, 면적 등을 파악한 量案을 비롯해 역둔토를 조사한 乙未査辦·光武査檢成冊, 도조징수내역을 기재한 賭租記類가 중심을 이룬다. 문서류는 역둔토를 둘러싼 중앙기구, 지방기구, 민들의 입장과 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대장류는 이러한 동향이 반영된 실제 징수 양상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장류와 문서류는 상호 연계된 문서인 것이다.

■ 대장류와 문서류를 분리한 內藏院의 문서분류체계

대한제국기 내장원은 역둔토를 관리하면서 생산한 이들 대장류와 문서류를 편철·분류하면서 대장류와 문서류를 조응해서 함께 편철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서 따로 편철한 특징이었다. 이로 인해 같은 시기에 함께 작성되거나 서로 연계된 대장류와 문서류가 별개의 문서처럼 따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장류와 문서류는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역둔토성책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서철마저 따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류와 문서류를 연계한 정리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대장류와 문서류를 연계한 종합 정리

대장류와 문서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둔토 운영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역둔토 연구는 대장류와 문서류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방대한 분량의 역둔토성책과 문서류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동일한 성격의 역둔토성책을 함께 묶어 査檢・定賭・徵收의 관리체계에 맞춰 한 질로 분류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와 아울러 해당 역둔토성책과 관련된 문서류까지 통합 정리해 대장류와 문서류를 연계한 종합정리와 심화해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3. 국내외의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역둔토는 국가재정사·토지제도사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연구과제였기 때문에 年代記·公文書·量案·收租記 등을 활용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영 및 토지소유관계, 농업경영, 농민층 동향 등이 규명되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역둔토와 관련된 연대기나 공문서와 같은 문서류와 양안, 수조기 같은 대장류를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개별 연구자가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방대한 분량의 역둔토 관련 문서류와 대장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둔토와 관련된 문서류와 대장류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한국학원구원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토대기초연구사업을 통해 屯土量 案에 대한 해설 작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그간 진행되지 못한 屯土量案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고 해설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업은 屯土量案 해설에 중 점을 두었기 때문에 査辦·査檢成冊과 賭租記類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사업은 관련 양안과 문서류를 연계해서 미해제로 남아 있는 査辦·査檢成冊과 賭租記類의 심화해제를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역둔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466종 1,833책의 驛屯土成冊이 소장되어 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1년 안에 이 모든 분량에 대한 정리 작업을 마칠 수 없다. 이에 본 사업팀은 먼저 경기도지역의 역둔토성책 425책(23.2%)을 1차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연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이를 이어서 충청도 지역의 역둔토 성책 453책(24.7%)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내용

■ 파편화되어 있는 대장류와 문서류를 연계해서 통합·정리한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은 역둔토를 관리하면서 생산한 대장류와 문서류를 각각 분리해서 따로 편철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시기에 함께 작성되거나 서로 연계된 대장류와 문서류가 별개의 문서처럼 따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류 상황은 역둔토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서로 관련된 역둔토성책과 문서류를 연계해서 통합·정리할 것이다.

■ 개별 자료별로 기재된 내용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의 해제를 지양한다

기존 해제는 도서번호를 단위로 개별 成冊을 작성연도, 작성자, 토지소재지, 작인 성명, 두락수, 징수액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제 내용은 원문을 보지 않고도 문서의 개요를 파악하는데 일정하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자료의 내용이 워낙지엽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역둔토성책이 담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평면적인 해제 방식을 지양하고자 한다.

■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동일한 장토를 대상으로 작성된 여러 건의 査辦·査檢成冊과 賭 租記類가 별개의 도서번호가 부여되어 다른 성격의 成冊과 뒤섞여 합철본의 형태로 분류되 어 있다. 이러한 역둔토성책을 도서번호가 아닌 각 지역의 동일 장토별로 모아 한꺼번에 비 교 검토하면 개별 자료를 각각 검토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단계 : 지역별, 역둔토별 목록 작성

작업 대상인 453책을 각 군을 단위로 역둔토별로 주요 목록정보를 엑셀에 입력한다. 입력할 사항은 도명, 군명, 면리명, 역둔토명, 문서종류(査辦成冊‧賭租記類 구분), 도서번호, 자료명, 작성연도 등이다. 엑셀 입력이 완료되면 각 군과 역둔토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동일한 군과 역둔토별로 자료를 분류한다.

2단계: 심화 해제 작성

역둔토성책의 분류가 완료되면 각 군을 단위로 동일한 성격의 역둔토성책을 묶어서 각기한 건의 심화해제를 작성한다. 심화해제에서는 일차적으로 역둔토성책들 간의 관계를 밝힌다음 관련 문서류의 목록을 작성해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역 둔토대장과 관련된 양안도 확인하여 밝혀 준다. 심화해제의 내용은 가) 자료 현황, 나) 관련역둔토의 내력, 다) 査辦·査檢成冊 내용 검토, 라) 賭租記類 내용 검토, 마) 관련 驛屯土量案 정리, 바) 관련 문서류 정리, 사) 기타 사항으로 구성한다.

항목별 작성 요령

- 가) 자료 현황 : 동일한 역둔토의 査辦·査檢成冊과 賭租記類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여러 건의 査辦·査檢成冊과 賭租記類가 있으면 이를 각각 연도순으로 정리한다.
- 나) 관련 역문토의 내력: 조선후기 역문토는 중앙 각사와 군영이 各司自辦의 원칙에 기초해 독자적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고 관리했다. 각 기관이 설치한 역문토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역문토의 내력을 서술한다.
- 다) 查辦·查檢成冊 내용 검토: 역둔토 관할기관이 역둔토의 소재지, 면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작성한 查辦·查檢成冊의 내용을 서술한다. 내용은 개별 자료의 내용에 대한 평면적인 소개를 지양하고 자료들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추적하여 서술한다.
- 라) 賭租記類 내용 검토 : 역둔토 관할기관이 査辦·査檢成冊을 바탕으로 해당 장토에서 매년 도조를 징수하면서 작성한 賭租記類를 함께 묶어 서술한다. 내용은 개별 자료의 내용에 대한 평면적인 소개를 지양하고 자료들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추적하여 서술한다.
- **마) 관련 驛屯土量案** : 역둔토양안 가운데 해당 역둔토와 관련된 양안이 있으면 서지정보와 내용을 밝혀준다.
- **바) 관련 문서류**: 역둔토 관련 문서류 가운데 해당 역둔토와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이를 역 둔토성책과 연계해서 내용을 밝혀준다.
- 사) 기타 사항: 7개 항목 외에 추가될 특징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예시 1)

驛屯土成冊 분류 목록

도	군	면리	둔토	문서 종류	컨성	도시	너번호	내별번 호	도서명	문서명	연도	
					을미 사판	1	奎 2	21898	2-2-8	經理院驛屯土成冊	天安郡所在前親軍營換屯畓斗落結數打作舍音作 人姓名幷査辦成冊	1896
				사판	2	奎 2	21898	2-2-10	經理院驛屯土成冊	天安郡所在前親軍營丁屯田畓斗數結數賭數舍音 作人姓名幷査辦成冊	1896	
忠清道	天安		親軍 營屯		1	奎 2	22113	1-1-8	慶尙南道東萊府所 屬舊大多牧田畓斗 數及賭價上納成冊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營各屯租成冊	1895	
道				賭租	2	奎 2	21056	2-1-1-	經理院秋收記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各屯及忠勳屯租成冊	1896	
				記類	3	奎 2	21093	4-2-11	經理院秋收記	天安親屯勳屯秋租作錢成冊	1896	
					4	奎 2	21150	4-2-12	經理院各道査檢成 冊及雜冊	天安郡所在親屯丁酉屯辛丑秋收成冊	1901	
					5	奎 2	21898	2-1-1	經理院驛屯土成冊	天安郡忠勳屯親屯堤堰畓新購砲畓屯畓秋收成冊	1906	

예시 2)

天安郡 親軍營屯成冊 심화 해제

가) 자료 현황

① 查辦·查檢成冊

번호	도서번호	내별번호	도서명	문서명	연도
1	奎 21898	2-2-8	經理院驛屯土成冊	天安郡所在前親軍營換屯畓斗落結數打作 舍音作人姓名幷査辦成冊	1896
2	奎 21898	2-2-10	經理院驛屯土成冊	天安郡所在前親軍營丁屯田畓斗數結數賭 數舍音作人姓名幷査辦成冊	1896

② 賭租記類

번호	도서번호	내별번호	도서명	문서명	연도
1	奎 22113	1-1-8	慶尙南道東萊府所 屬舊大多牧田畓斗 數及賭價上納成冊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營各屯租成冊	1895
2	奎 21093	4-2-11	經理院秋收記	天安親屯勳屯秋租作錢成冊	1896
3	奎 21056	2-1-1-8	經理院秋收記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各屯及忠勳屯 租成冊	1896
4	奎 21150	4-2-12	經理院各道査檢成 冊及雜冊	天安郡所在親屯丁酉屯辛丑秋收成冊	1901
5	奎 21898	2-1-1	經理院驛屯土成冊	天安郡忠勳屯親屯堤堰畓新購砲畓屯畓秋 收成冊	1906

나) 관련 역둔토의 내력

親軍營屯은 親軍營에 소속된 둔전이다. 친군영은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창설되어, 국왕의 시위 및 궁궐파수와 도성수비 등을 담당하였다. 1882년 친군 좌영과 우영으로 편제된 2영 체제에서 1884년 친군 좌·우·전·후·별영을 설치해 5營 체제를 갖추었다. 1883년 6월 훈련도감의 부속기관이었던 糧餉廳을 친군영이라고 부르며 친군좌우영의 군수품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1886년 친군 海防營을 설치하고, 1887년 강화도에 親軍 沁營을

설치하며 친군영체제를 확대하였다. 친군영둔의 결부수는 3,368결이다(《조선전제고》).

다) 査辦・査檢成冊 내용 검토

〈天安郡所在前親軍營換屯畓斗落結數打作舍音作人姓名幷査辦成冊〉과 〈天安郡所在前親軍營丁屯田畓斗數結數賭數舍音作人姓名幷査辦成冊〉(《經理院驛屯土成冊》(奎 21898))은 1896년 8월 公州府査辦委員 孔承鐸이 가평군 소재 친군영둔을 조사해서 작성한 사판성책이다. 천안군 소재 친군영둔은 親軍換屯과 親軍丁酉屯 두 장토가 있었고 사판성책도 각각 작성되었다.

조선후기 역토·둔토는 국가기관이 各司自辦의 원칙에 기초해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계기로 역토·둔토의 관할권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게되었다. 역토는 우체 업무를 담당했던 農商工部가 관리했고, 둔토는 국가재정기구인 度支部가 관리했다. 둔토는 탁지부가 관할했지만 개화파 세력과 왕실 세력의 갈등 속에서 1895년부터 탁지부와 궁내부로 나뉘어져 관리되었고, 궁내부가 둔토의 82%정도를 장악하였다.

역토·둔토 관할권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역토·둔토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역토를 관할한 농상공부는 1895년 9월부터 전국에 査辦委員을 파견해 역토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6년 2월 탁지부와 궁내부는 자신들이 관할한 둔토도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로 인해 농상공부가 역토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에 파견했던 査辦委員은 역토뿐 아니라 탁지부와 궁내부가 관할한 둔토까지도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

公州府査辦委員은 농사공부가 역토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사판위원이었지만, 그는 역토를 조사하면서 천안군 소재 친군영둔도 조사하였던 것이다. 위 두 성책은 이때 작성된 乙未 査辦成冊인 것이다.

〈天安郡所在前親軍營換屯畓斗落結數打作舍音作人姓名幷査辦成冊〉의 문서 체계는 郡西面龍岩里, 書堂里로 지역을 구분하고 필지를 기재하였다. 필지는 '지목, 두락수, 결부수, 타조량, 작인 성명'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親軍換屯은 답 3석 19두락, 1결 87부 6속에서 타조17석을 징수했다.

〈天安郡所在前親軍營丁屯田畓斗數結數賭數舍音作人姓名幷査辦成冊〉의 문서 체계는 下里面 紙井里, 北一面, 上里面, 北二面, 郡西面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필지를 기재하였다. 필지는 '자호, 지목, 두락수, 결부수, 도조량, 작인 성명'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親軍丁酉屯은 답 7석 4두 5승락, 전 3석 8두락, 결부수 5결 41부 2속에서 도조 46석 19두 5승을 징수했다. 총 징수량에서 마름료 4석, 邑納錢 2석 15두, 留糧 7석 13두, 합계 14석 8두를 지출해 실상납량은 32석 11두 5승이었다.

동일한 친군영둔이었지만 親軍換屯은 타조로, 親軍丁酉屯은 도조로 징수해 지주경영방식이 달랐다.

라) 賭租記類 내용 검토

위 5건의 도조기는 1895-1906년 사이에 천안군 소재 친군영둔의 징수내역을 기록한 성책이다. 이 가운데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營各屯租成冊〉에는 忠勳府屯, 〈天安親屯勳屯秋租作錢成冊〉에는 別備屯, 충훈부둔, 〈天安郡忠勳屯親屯堤堰畓新購砲畓屯畓秋收成冊〉에는 충훈부둔, 제언답, 新購砲屯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친군영둔 외 각 둔토는 천안군 각 둔토의 심화 해제 참조).

듯이 위 3건의 도조기는 궁내부가 둔토를 관할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1895년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營各屯租成冊〉,

1896년

〈宮內府納天安郡所在前親軍各屯及忠勳屯租成冊〉의 문서 체계는 親軍丁酉屯과 親軍換屯을 구분하고, 각 둔토내에는 下里面, 北一面 등 지역을 구분하고 필지를 기재하였다. 丁酉屯의 필지는 '자호, 지목, 두락수, 租+징수량, 작인 성명' 순으로, 換屯의 필지는 '지목, 두락수, 租+징수량, 작인 성명'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판성책은 타조와 도조를 표기하고 징수량을 기재했지만 본 성책은 타조와 도조를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6년 성책에 親軍換屯은 타조로, 親軍丁酉屯은 도조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지주경영방식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天安郡所在親屯丁酉屯辛丑秋收成冊〉에는 親軍丁酉屯만 기재되어 있다. 본 성책의 문서 체계는 지목별로 답, 전, 垈를 구분하고 필지를 기재하였다. 답은 특정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下里面 紙井里, 蟻項里 등 지역을 구분하고 필지를 '자호, 지목, 두락수, 夜味數, 도조량, 작인 성명' 순으로 기재하였다. 각 필지에 '未移', '晚移'로 이앙 여부를 기재하였다.

전은 '田賭秩' 항목을 설정하고 필지를 '자호, 지목, 두락수, 도조량, 작인 성명' 순으로 기재하였다. 垈는 '垈賭秩' 항목을 설정하고 필지를 '작인 성명, 징수량' 순으로 기재하였다.

1906년〈天安郡忠勳屯親屯堤堰畓新購砲畓屯畓秋收成冊〉에는 親軍丁酉屯과 親軍換屯이모두 기재되어 있다. 親軍丁酉屯의 기재 방식은 1901년도 성책과 동일하다. 親軍換屯은郡西面 書堂谷과 防築洞으로 장토를 구분하고 필지를 '자호, 지목, 두락수, 마미수, 타조량, 작인 성명' 순으로 기재하였다. 親軍丁酉屯과 親軍換屯의 일부 필지에는 '伏沙', '水破', '荒' 등 재해 여부를 기재하고 징수량을 감액한 액수를 기재하였다.

연도별 징수량은 다음과 같다.

1895-1906년 천안군 소재 친군영둔답의 징수량

연도	親軍	「酉屯	親軍	합계	
신포	두락수	징수량	두락수	징수량	뇹/개
1895		49석 17.5두		20석 4두	70석 1.5두
1896		54석 9.2두		22석 1두	76석 10.2두
1901	7석 8.5두락	11석 2두			
1906	7석 2.5두락	41석 14두	3석 19두락	16석 14두	58석 8두

親軍丁酉屯畓의 징수량은 1895년 49석 17두 5승, 1896년 54석 9두 2승으로 비슷한수준을 유지했지만, 1901년 11석 2두로 급감하고, 1906년도 41석 14두로 약간 감소했다. 1901년에 징수량이 급감한 것은 극심한 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1901년은 전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들어 전라도、충청도、경기도、황해도는 모두 벌거숭이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흉년이 든 곳이 5분의 3이나 된다고 할 정도였다(《高宗實錄》卷41, 1901.10.10). 이로 인해천안군 소재 친군영둔도 징수량이 급감했던 것이다.

1901년은 답 7석 8두 5승락에서 5석 19두 5승락이 이앙을 하지 못해 1석 9두락에서 도조 11석 2두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1906년은 답 7석 2두 5승락에서 原賭가 48석 5두였지만 징수량은 41석 14두였다. 1906년 성책의 필지에 '水破', '荒'등 재해 여부를 기재되어 있었듯이 이 역시 재해로 인해 6석 11두를 감액했던 것이다.

親軍換屯畓의 징수량도 1895년 20석 4두, 1896년 22석 1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906년 16석 14두로 약간 감소했다. 親軍換屯畓 역시 재해로 인해 징수량이 감소했던 것이다.

親軍丁酉屯 田・垈 징수량

연도	E	В	<u> </u>	<u>t</u>	합계
신포	두락수	징수량	좌수	징수량	습기
1901		3석 7두		5석 4.5두	8석 11.5두
1906	2석 17두락	2석 18두	25座	5석 13.5두	8석 11.5두

親軍丁酉屯田의 징수량은 1901년 3석 7두, 1906년 2석 18두로 약간 감소했다. 1906년은 2석 17두락에서 18두 5승락이 伏沙되어 原賭 4석 1두에서 1석 3두를 감액해 2석 18두를 징수했다.

垈의 징수량은 1901년 5석 4두 5승, 1906년 5석 13두 5승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1895-1901년 천안군 소재 친군영둔답의 지출량

연도	親軍	「酉屯	親軍	합계	
인포	결세	마름료	결세	마름료	합계
1895	27석 1.2두		9석 7.6두		36석 8.8두
1896	27석 1.2두	4석	9석 7.6두	2석	42석 8.8두
1901	9석 0.4두				9석 0.4두

親軍丁酉屯은 1895-1896년에 답 5결 41부 2속의 결세로 27석 1두 2승을 지출했고, 1901년은 답, 전, 垈의 결세로 9석 4승을 지출했다. 1901년은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들어서 답, 전, 垈의 전체 결수에서 5결 42속을 제한 나머지 결수에 대해 결세로 9석 4승을 지출했다.

親軍換屯은 1결 87부 6속의 결세 9석 7두 6승을 지출했고, 1896년은 마름료로 2석을 추가로 지출했다.

1896년 5월에 작성된 〈天安親屯勳屯秋租作錢成冊〉에는 추수조를 作錢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친둔에서 正祖 33석 12두 7승, 별비둔에서 정조 30석 6두, 합계 63석 18두 7승을 징수해서 매석 37냥씩 2,365냥 6전으로 作錢하고, 여기서 屯監 왕래비 400냥을 지출해 실상납량은 1,965냥 6전이었다. 앞서 살펴본 도조기류에 따르면 1895년은 전체 징수량이 70석 1두 5승이었고, 여기서 결세 36석 8두 8승을 지출해 실상납량은 33석 12두 7승이었다. 이는 본 성책에서 作錢한 징수량과 일치한다.

마) 관련 驛屯土量案

해당 사항 없음.

바) 관련 문서류

천안군 소재 친군영둔과 관련된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도서명	청구기호	책순서	발신자	수신자	연도
訓令照會存案	奎 19143	3	內藏院	天安郡	1899년 10월 13일
訓令	古 5121-2	1	宮內府	天安郡	1896년 4월 19일
忠淸南北道各郡 報告	奎 19149	6	天安郡	內藏院	1902년 4월 4일

1899년 1월 13일《訓令照會存案》의 문서는 천안군 親屯, 勳屯, 訓屯,別備屯의 監官 鄭台 鉉을 내려 보내니 作人들에 알리라는 내용이다.

1896년 4월 19일 《訓令》의 문서는 적치한 천안군 親屯, 勳屯 正租를 파감에게 출급하여 시가에 따라 방매해서 作錢 상납하라는 내용이다. 본 훈령에 따라 천안군 친둔 정조의 작전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 1896년 5월에 작성된〈天安親屯勳屯秋租作錢成冊〉인 것이다.

1902년 4월 4일 《忠淸南北道各郡報告》의 문서는 천안군 換屯, 丁酉屯, 別備屯 등의 결세를 作人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屯租에서 지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결세는 작인이 부담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 때문인지 천안군 친군영둔 성책에 따르면 1901년까지는 결세를 둔토의 추수조에서 지출했는데 1906년 성책에는 결세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 기타 사항

해당 사항 없음.

5. 신청 주제와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연구 성과

1. 저서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고종시대 공문서 연구』(공저), 태학사, 2009.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2. 논문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규장각 관리와 소장 자료의 활용」 『규장각』33, 2008.

「조선말 세도정치하 지방관아 재정위기의 원인과 실제」 『전농사론』7, 2001.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사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규장각』16, 1994.

[1894-1910년 지방세제의 시행과 일제의 조세수탈] 『한국사론』26, 1991.

6. 연구추진 일정 및 연구 분담 계획

1) 연구추진 일정

 ■자료 수집 및 목록정보 입력 : 2021년 계약 체결일 ~ 6월 15일

 ■심화 해제 작성 : 2021년 6월 16일 ~ 11월 30일

■교열 및 보고서 제출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15일

2) 연구분담계획

■ 연구책임자 : 교열 및 사업 총괄 ■ 공동연구원 : 심화해제 작성

■연구보조원: 자료수집 및 목록정보 입력

7.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계획

1) 기대효과

■ 역둔토 자료 활용의 기반 마련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상당수의 驛屯土成冊은 서로 다른 성격의 成冊과 뒤섞여 합철본으로 편철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驛屯土成冊의 성격이 사장된 채 명확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합철본의 驛屯土成冊을 동일한 장토별로 재분류하고, 관련 量案 및 문서류와 연계한 종합 정리는 역둔토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토지제도사와 국가재정사 연구의 지평 확대

驛屯土成冊에는 역둔토의 실태를 조사한 査辦・査檢成冊과 한 해의 실질적인 징수실태를 기록한 賭租記類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역둔토 관할기관의 역둔토 경영방식과 재정 운영 양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토를 기준으로 개별 驛屯土成冊을 상호 연계한 내용 검토 및 양안과 문서류를 연계한 심화 해제는 토지제도사와 국가재정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활용계획

본 사업의 결과 작성된 심화해제는 **규장각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查辦·查檢成冊과 賭租記類, 驛屯土量案, 訓令·報告·訴狀의 문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들 정보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소속				E-mail			
	성명	(한글)	(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 회	사무실 :			
	주소							
	7]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핰								
력								
경	7]	간		7]	관	직	위	비고
력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및 진행 신청중인 연구과제

- 연구실적

논문	 실적						
게재 년월	논문명	ō	라술 지명	발행처명		학술지 구분	전체 저자수
2020. 10	解放後韓國人識者層の三・一運動認 識の變遷と多様な摸索		史研究會論文 集』58	朝鮮史研究會			1
2019. 12	인권 사상의 역사적 기반과 전개		와역사』124	한국사회	사학회	등재	1
2019. 12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近代 資料의 수록 양상과 脈絡化의 실제	『역시	∤교육』152	역사교육역	연구회	등재	1
2019. 12	고종 즉위~갑오개혁 초기 開城府 위상의 변동과 歲出入의 추이	『역/	『역사연구』37		[구소	등재	1
2018.	일제강점기 朴殷植의『韓國痛史』 출간과 筆寫本의 특징	『진단	<u></u> 한보』130	진단학	회	등재	1
발행 년월	저역서명		발행처	명	저역 구년		전체 터자수
2020. 12	역사화해를 위한 한일대화(역사	편)	동북아역/	나재 단	저소	1	10
2020. 7	차상찬 연구 : 일제강점기 문화운 선구자	동의	모시는사	람들	저소	1	19
2019.	3.1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계	데	지식산역	업사	저스	1	10
2018.	근대 재정개혁의 설계자 어윤중과 시대	그의	아카	킛	저스	1	1

- 진행·신청중인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단위 : 천원)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2. 공동연구원

	소속				E-mail			
	성명	(한글)		(힌	자)			
생]년월일			전 호	사무실 핸드폰	:		
	주소							
	7]	간	호	ᅡ교	전 공	학	위	비고
학								
력								
경	7]	간		7]	관	직	위	비고
력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및 진행 신청중인 연구과제

- 연구실적

논문실적						
게재 년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명	학술지 구분	전체 저자수	
2020. 11	19세기 말~20세기 초 강원지역 궁방전의 농업경영	『강원사학』35	강원사학회	등재	1	
2019.	19세기 말~20세기 초 궁방전 지주경영의 또 다른 양상: 삼남지역 導掌을 중심으로	『한국문화』8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재	1	
201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經理院可考件』의 편철 양상과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규장각』5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재후보	1	
2018. 9	통감부시기 궁방전의 소유권 판별과 조선토지조사사업 국유지분쟁의 원인	『한국문화』8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재	1	
2018. 4	통감부시기 황실재정정리기구의 궁방전 도장(導掌) 정리와 도장권에 대한 인식	『역사문제연구』22	역사문제연구소	등재	1	
저역서						
발행 년월	저역서명		발행처명	저역서 구분	전체 저자수	

- 진행·신청중인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단위 : 천원)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3. 연구보조원

	소속				E-mail			
	성명	(한글)		(힌	자)			
생]년월일			전 호	사무실 핸드폰	:		
	주소							
	7]	간	호	ᅡ교	전 공	학	위	비고
학								
력								
경	7]	간		7]	관	직	위	비고
력								

□ 예산서

한국학 연구용역 사업 연구비 산출내역서

(연구책임자: 성명 (인))

(단위 : 천원)

항 목		신 청 액	산 출 내 역		
① 인건비		34,650천원	① 연구책임자: 1(인)×9(월)×300(월) = 2,700천원 ② 공동연구원: 1(인)×9(월)×3,200(월) = 28,800천원 (* 공동연구원 인건비는 용역 참여율을 65%로 산정한 것임) ③ 연구보조원: 1(인)×9(월)×350(월) = 3,150천원		
	소 계	34,650천원			
	. 회의비	450천원	정규 회의 월 1회×9(월) = 50천원		
2	. 여비				
연구 활동	. 유인물비	2,500천원	규장각 마이크로 필름 출력 및 복사비		
경비	. 교 <u>통통</u> 신비				
	. 기타비용				
	소 계	2,950천원			
3	. 조사연구비				
직접성	. 문헌구입비				
경비	. 전산처리비				
	소 계				
④ 간접비	. 간접연구경비	1,880,000원			
	소 계	1,880,000원			
⑤ 부가가치세		3,948,000원			
	소 계	3,948,000원			
	합 계	43,428,000원			